

의안번호	2218425
의 퇴 인	김정호의원
회 답 일	2026.5.11.
추계번호	26B2231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3 (산재보험료의 지원) 신설	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함. 이 경우 “고용보험료”는 “산재보험료”로 봄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8조의8 (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) 신설	국가는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48조의6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고용보험료”는 “산재보험료”로 봄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의3 (산재보험료의 지원) 신설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2	안 제48조의8 (산재보험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) 신설	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, 재산과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국가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¹⁾ 규정하고 있음
 - 또한,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현행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²⁾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³⁾에 따라 제21조가 준용되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
 - 국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(두루누리) 사업을 통해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

1) 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3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
2) 제48조의2(예술인 고용보험 특례)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3.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, 경감,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·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의2(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제23조(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), 제25조(제16조의3, 제16조의6, 제16조의7,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예술인"으로 본다.

3) 제48조의3(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)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3.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, 경감,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,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·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의2(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제23조(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), 제25조(제16조의3, 제16조의6, 제16조의7,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근로자"는 "노무제공자"로 본다.

[표] 두루누리 지원사업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명)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
두루누리	지원액	2,067	1,051	981	1,466	1,651
	지원자 수	1,313,754	377,861	381,329	537,315	656,232

주: 1.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에 한함

2. 결산기준

3. 월평균 지원자 수입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⁴⁾⁵⁾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나,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추가적인 재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하며, 지원 수준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4) 제13조(보험료)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.

5) 제48조의6(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)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(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)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. 다만, 사용종속관계(使用從屬關係)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